

급여이용정보 현황

- 목 차 -

1. 시설개요	1
2. 운영규정의 개요	1
3. 종사자 현황	2
4. 급여 및 비급여 비용 현황	3
5.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3
6. 주요시설현황	3

1. 시설개요

- 시 설 명 : 예심요양원
- 설립일자 : 2025년 06월 23일
- 급여종류 : 시설급여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6길,6. 201호
- 연 락 처 : 전화(052-260-3191), 팩스(052-269-3191)

2. 운영규정의 개요

① 입소정원 : 28명

② 입소 대상

- 65세 이상의 중증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판정(1~5등급)을 받은 자. 단, 3~5등급은 시설급여에 한함.
- 입소는 전국 어느 시설이나 이용 가능

③ 입소 계약

○ 보험대상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증 신청 → 장기요양 인증서 발급 완료 후 → 전화 및 내방상담(요양인증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지참) → 대기 신청서 접수(필요시) → 건강진단서 및 입소 서류 구비 후 계약체결 → 입소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증 신청 → 장기요양 인증서 발급 완료 후 → 전화 및 내방상담(요양인증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지참) → 시.군.구에 입소 신청 → 입소이용 결정 통보 → 건강진단서 및 입소 서류 구비 후 입소계약 → 입소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④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 1달에 2회 이상 계약의 진료 서비스를 받으며, 시설은 의사 소견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대상자(보호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인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는다. 이 때 응급한 상황일 경우는 선 조치 후 협의할 수 있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에서는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또는 협력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요청하고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진료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⑤ 시설물 사용 등

- 입소자는 시설의 모든 비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반듯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 시설물을 고의파손, 또는 부주의하여 파손하거나 손괴 하였을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3. 종사자 현황

① 직종별 배치 인력

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작업/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위생원/관리인	계약의	영양사/조리사	조리원
7	1	0	1	4	0	0	1	0	1	0	0

② 근무형태 및 인원

- 근무형태 : 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 요양보호사 : 2교대(D:09~18:00, N:18:00~09:00)
 - 간호(조무)사 : 주간근무(09:00~18:00)
 - 교대제 근무 이외의 직원(사무실 등) : 09~18. 토, 일 당직근무
- 근무 인원
 - 위 근무형태에 따라 월 근무편성표를 작성하며, 평.휴일 휴무 조정 시 생활실근무자는 최소 인원 기준으로 간호사 포함 3명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간호사 주간 종료 이후에는 비상연락망을 확보한다.

4. 급여 및 비급여 비용 현황

(2026.01.01 기준)

구분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인상금액	경감(12%)	경감(8%)
		현행	26.1.1부터		'26.1.1부터	'26.1.1부터
본인부담금	1등급	542,700	558,420	15,720	335,052	223,368
	2등급	503,460	518,040	14,580	310,824	207,216
	3~5등급	475,440	489,240	13,800	293,544	195,696
비급여	식재료비 (간식포함)	1일 : 11,500 식재료비 : 3,500*3회=10,500 간식비 : 1000 30일 : 345,000		1일 : 11,500 식재료비 : 3,500*3회=10,500 간식비 : 1000 30일 : 345,000	1일 : 11,500 식재료비 : 3,500*3회=10,500 간식비 : 1000 30일 : 345,000	
	상급침실료	2인실 : 일 5,000(매월 150,000) 1인실 : 일 10,000(매월 300,000)				
	이·미용비	실비발생액			봉사자 연결 시에는 청구하지 않음	
합계	1등급		903,420		680,052	568,368
	2등급		863,040		655,824	552,216
	3등급		834,240		638,544	540,696

5.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보 험 종 류	보 험 사	보험가입기간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26.08.04~2027.08.03
화재배상보험	NH농협손해보험	2024.11.14~2034.11.14

6. 주요시설 현황

- 부지면적 : 1551.1㎡
- 건물연면적 : 1,052.85㎡
- 층별현황

구분	구조물	면적(㎡)	시설현황
2층	철근콘크리트	1,052.85	식당,생활실,1.2프로그램실,행정실,면회실,목욕실 간호사실,직원휴게실,다용도실,로비,비상 대피시설

운영규정의 개요

급여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① 예심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28명으로 한다. 단,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 정원 5% 이내에서 단기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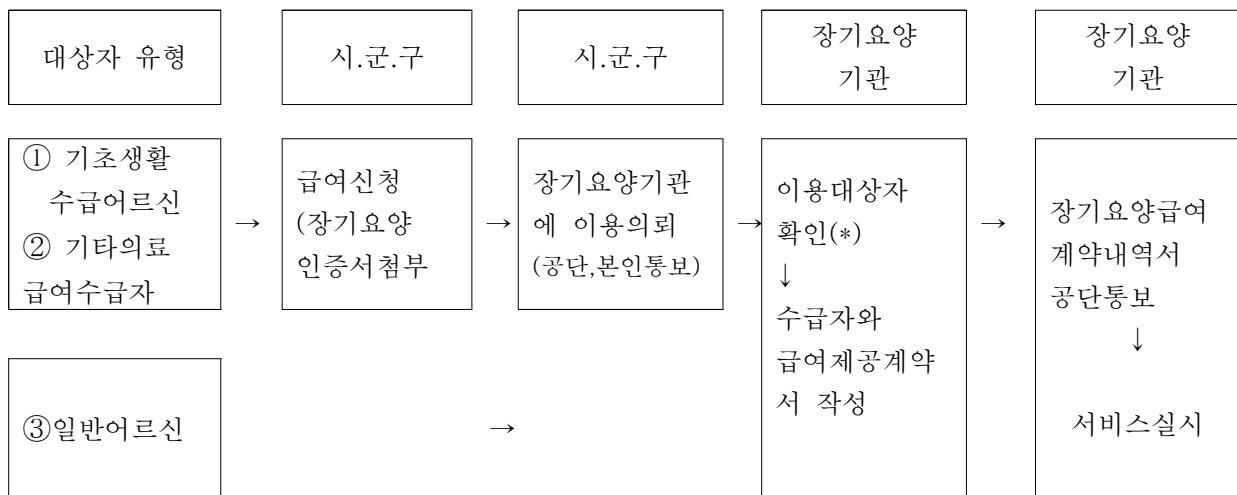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예심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입소절차) ①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수급어르신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 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어르신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어르신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 군 구청장이 이용 의뢰 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유선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구비 서류)

1.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2. 질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1부.
3. 법정전염병 검사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기요양인정서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7. 약물 복용 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해당자)각 1부.
8.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 각 1부.

(입소 시 지참 물품) 최소한의 필요 물품으로 하되, 입소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개인 물품 및 의류를 반입하여 착용할 수 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예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목적

(계약목적) ① 예심요양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

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 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 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또는 10의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대상자는 12%, 감정대상자는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⑧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⑨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 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⑩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 ⑪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 ⑫ 시설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급여 (1일)- 매년 수가 변경될 수 있음

2026년 수가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 급여	노인요양시설 (개정법)	93,070	86,340	81,54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2인실:월 150,000원, 1인실: 월 300,000원		
	식재료비(1식)	1식 : 3,500원*3회		
	간식비(1회)	1일 ; 1,000원		
	이·미용료등	없음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 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 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⑬ 4,5등급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⑭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30일기준)

. 식사재료비 1식 3,500원

. 상급침실 이용료 2인실 : 월 150,000원, 1인실 : 월 300,000

. 시설(입소)급여는 일반 개인부담율 20%, 감경대상자는 12%, 감경대상자는 8%

⑮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용(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⑥ 시설급여비용 중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 산정, 31일의 경우 1일 추가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비용수납) ①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납부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② 입금계좌시에는 “ 659-80-03209 (예금주: 예심요양원)” 으로 한다

③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5일이내로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단, 토·일요일은제외)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의무를 다한다.
3. **신원 인수인 권리**: 입소자는 케어 받을 권리가 있으며 케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어르신 케어과정에서 상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예심요양원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울산현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퇴소 및 전원) ① “갑”은 본 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 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의 소정의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과 “병”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이 퇴거 시 선불 및 보증금(해당시설 및 해당자) 등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④ “을” 또는 “병”이 퇴소나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갑”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망) ① 보호자가 없는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원장은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례 절차는 거주 어르신과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센터에서 결정하며, 거주 어르신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④ 거주 어르신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과실이나 현저한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 직원을 직원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해야 한다.

(입소자 사망 및 유류금품 처리) 입소자 사망 및 유류금품 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1.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입소 어르신의 의견이 보호자나 원장의 의견에 우선 한다.

2. 의 장은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3. 유류금품 처리는 입소자의 유언에 따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자가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을 때는 연고자의 의사에 따른다.

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인인 부양의무자(민법 제974조)가 부양을 회피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고, 국가 또는 이 부양의무 없는 제3자로서 어르신을 부양하였으므로 부양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유류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이로 귀속하여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